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22149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교식

변론 종결2022. 12. 15.

판결 선고2023.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D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1. 6. 23.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에서 원고 A과 망 G의 자녀인 망 H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하였는데, 망 H는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그 무렵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순환 혈액량 감소와 파종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였다. 나. D은 2011. 11. 11. 망 G에게 망 H에 대한 위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합의 당일, 나머지 3억 원은 2012. 1. 31.부터 2014. 6. 30.까지 30개월 간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합의각서에 '연대보증인 피고는 채무자 D과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합의각서에 연대보증인 날인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D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망 G에게 채권자 망 G,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여, 위 합의각서에 따른 3억 원을 차용금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1년 제52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년 11월 11.일 금 삼억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년 1월 3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0개월간 매월 말일 금 10,000,000원정을 각각 분할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삼억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D은 망 G에게 아래와 같이 2012. 1. 31.부터 2013. 10. 31.까지 총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2.01.31.	10,000,000
2012.02.28.	10,000,000
2012.04.30.	5,000,000
2012.05.31.	5,000,000
2012.06.30.	5,000,000
2012.09.28.	5,000,000
2012.10.31.	5,000,000
2012.12.08.	3,000,000
2013.01.31.	7,000,000
2013.03.29.	5,000,000
2013.06.03.	5,000,000
2013.10.31.	3,000,000
합계	68,000,000

라. D은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2559호로 파산신청을 하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290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위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에서 D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망 G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망 G은 2017. 5.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과 자녀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및 공정증서를 통해 D의 망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4. 11.

11.까지 발생한 D의 망 G에 대한 주채무는 잔존 원금 249,955,931원, 이자 61,644,831원(최종 변제일인 2013. 10. 31.까지의 변제충당 후 이자 잔액 10,147,062원 +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2014. 11. 11.까지 발생한 원금 249,955,931원에 대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이자 51,497,769원)의 합계 311,600,762원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보증채무 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3억 원(망 G의 공동상속인 원고 A 1억 8,000만 원, 망 G의 공동상속인 원고 B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증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서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라 할 것인데, 망 G 내지 원고들은 주채무의 최종변제기인 2014. 6. 30.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7. 6. 30.까지 피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2017. 6. 30.자로 소멸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공정증서 조항의 보증채무 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닌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의 의미가 쟁점이 되어 있고, 그 의미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아래에서 위 쟁점에 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이 보증채무의 기간을 3년까지로 정한 것은 그 때까지 채권자인 망 G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보증채무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기간'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은 단순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뿐 망 G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보증채무 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와 공정증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이고, 합의각서에는 연대보증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보증채무 기간에 대한 표현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이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보증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는 '보증채무의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정증서 조항이 단순히 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의 규정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보증기간'에 관한 해석은 계속적인 주채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근보증의 경우에 의미 있는 것인데, 피고가 보증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는 최종변제기를 2014. 6. 30.로 정한 원금 3억 원의 확정된 채무로서 3년의 보증채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채무가 늘어날 사정이 특별히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3억 원으로 이미 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채무 원금 3억 원을 30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보증기간의 범위에 따라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가 애초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조에서 주채무는 3억 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2011. 11. 11.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공정증서 제2조는 위와 같이 성립·확정된 채무의 변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의 변제기인 2014. 6. 30.부터 보증채무 기간 3년이 경과된 2017. 6. 30.이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의 보증채무 기간 내에 원고 측이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피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형